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1월 27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5일 (금)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11월 19일 (화)

4. 관련근거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5.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제894호 부칙에 의거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 가.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을 연장함(조례 제894호 부칙 제3조).
 -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2013.7.26.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2013.7.1. 시행)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7.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관광호텔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중 “제5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12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부칙 안 제3조에서 적용시한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2012년 구세 감면 내역

세목	내용	건수	금액(천원)	비고
계		36	231,505	
재산세	시장정비사업 감면	2	2,725	
재산세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	11	227,038	
재산세	전직대통령 주택 감면	1	1,737	
등록면허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 공제	22	5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⑧ 생략